-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전부개정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 호	제2597호

2021. 5. 12.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21. 4. 26. 양천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21. 4. 30. 복지건설위원회

다. 상정일자 : 제28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
2021. 5. 12. 상정 ·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 (주민복지국장)

가. 제안이유

「아동복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제명을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함.(안 제명)

○ 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2조, 제3조)

○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.(안 제4조, 제5조)

○ 위원장의 직무를 정하고, 위원회의 회의 개최와 의결, 간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6조 및 제7조)

○ 위원회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8조)

○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비밀 유지의 의무를 정함.(안 제9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신훈)

○ 본 조례 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,

- 「아동복지법」 제12조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개정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상위법 위임 사항에 맞게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본 조례는 2013년 5월 10일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제정되어 운영 중.
- 조례의 제명을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제13조(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)에 따라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함.
-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인 기존 조례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법 및 시행령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함.
- 안 제2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의 10명

이내의 위원에서 경찰공무원 및 아동·사회복지 등의 전공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15명으로 변경하였으며,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21조제2항을 반영한 것임.

-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,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·해촉,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임시회의 개최 시 기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로 변경함.
- 안 제8조는 위원회에서 활동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임.

○ 본 조례안은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되는 가운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·보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시기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적의원 8명, 출석의원 8명 만장일치 의결)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